

『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음식물쓰레기의 수집, 운반, 처리 수수료의 부과, 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
- 음식물쓰레기 수집, 운반 및 재활용대상자를 수정

3. 주요내용

-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변경(제7조)
 - 관리대장 보존기간 변경 : 1년 → 2년
 - 변경신고사항 및 신고필증 교부사항 신설
-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대상 확대(제10조제2항)
 - 100세대 이상 → 20세대 이상
- 음식물쓰레기의 수집, 운반 처리수수료 변경(제11조제1항)
 - 음식물쓰레기의 수집, 운반 처리수수료 중 전용수거용기 사용시
ℓ 당 11원 ⇒ [별표3]으로 세분하여 징수
 -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: 세대당 월 1,500원
 - 감량의무사업장외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 : 객실, 객실면적 30㎡ 이하 월3,000원, 객실, 객실면적 31㎡이상 60㎡이하 업소당 월6,000원, 객실, 객실면적 61㎡이상 100㎡이하 업소당 월9,000원
- 음식물쓰레기의 수집, 운반 및 재활용 대상 수정(제12조제2항)
 -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⇒ 감량의무사업장 등

4. 참고사항

○ 근거법령

- 폐기물관리법 제13조, 제15조
-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수집, 운반, 처리 수수료의 부과, 징수를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부과, 징수하는 개정 조례임.
- 주요 내용으로는
 -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변경(제7조)
 - 관리대장 보존기간 변경 : 1년 → 2년
 - 변경신고사항 및 신고필증 교부사항 신설
 -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대상 확대(제10조제2항)
 - 100세대 이상 → 20세대 이상
 - 음식물쓰레기의 수집, 운반 처리수수료 변경(제11조제1항)
 - 음식물쓰레기의 수집, 운반 처리수수료 중 전용수거용기 사용시
ℓ 당 11원 ⇒ [별표3]으로 세분하여 징수
 -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: 세대당 월 1,500원
 -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 : 객실, 객실면적 30㎡ 이하 월3,000원, 객실, 객실면적 31㎡이상 60㎡이하 업소당 월6,000원, 객실, 객실면적 61㎡이상 100㎡이하 업소당 월9,000원
 - 음식물쓰레기의 수집, 운반 및 재활용 대상 수정(제12조제2항)
 -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⇒ 감량의무사업장 등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,
- 조례안의 내용이,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,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